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1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련 조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 나. 수급자, 수급권자 등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의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9. 3. ~ 9. 2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 규칙 심의회 심의 · 의결(2015. 10. 6.)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u> 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이 총 70,000천원으로,
- 총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이승희
연 락 처	02-3153-6454